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(장경태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2734

발의연월일: 2020. 8. 5.

발 의 자: 장경태·오영환·강훈식

전용기 · 김남국 · 김용민

양향자 • 이수진비 • 이용빈

민형배 · 최혜영 의원

(11일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의 제정과 개폐 청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19세 이상의 주민에 한하여 부여하고 있음.

그러나 향상된 교육수준과 성숙된 정치사회적 판단능력을 고려할 때, 16세에 도달한 청소년도 지방자치제도의 취지와 그 내용 및 지방의의 조례입법절차를 이해하고 조례의 제정과 개폐를 청구할 수 있을 정도로 정신적·신체적 자율성을 충분히 갖추었다고 볼 수 있음. 조례의 제정과 개폐 청구를 할 수 있는 주민의 연령 제한을 하향하여주민자치 실현 과정에 보다 다양한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해야 함.

이에 16세 이상의 주민에게 조례의 제정 및 개폐청구권을 부여하도록 하여 주민자치에 참여할 수 있는 주민의 범위를 확대하고 성숙한 지방자치제도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(안 제15조제1항).

법률 제 호

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

지방자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19세"를 각각 "16세"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| 현 행 | 개 정 안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
| 제15조(조례의 제정과 개폐 청구) | 제15조(조례의 제정과 개폐 청구) |
| ① <u>19세</u> 이상의 주민으로서 다 | ① <u>16세</u> |
|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| |
| 하는 사람(「공직선거법」 제1 | |
| 8조에 따른 선거권이 없는 자 | |
| 는 제외한다. 이하 이 조 및 제 | |
| 16조에서 " <u>19세</u> 이상의 주민" | <u>16세</u> |
| 이라 한다)은 시·도와 제175조 | |
| 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 | |
| 시에서는 <u>19세</u> 이상 주민 총수 | <u>16</u> *1] |
| 의 100분의 1 이상 70분의 1 | |
| 이하, 시 \cdot 군 및 자치구에서는 1 | <u>1</u> |
| <u>9세</u> 이상 주민 총수의 50분의 | <u> 6체</u> |
| 1 이상 20분의 1 이하의 범위 | |
| 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| |
| 정하는 <u>19세</u> 이상의 주민 수 | <u>16세</u> |
| 이상의 연서(連署)로 해당 지방 | |
| 자치단체의 장에게 조례를 제 | |
| 정하거나 개정하거나 폐지할 | |
| 것을 청구할 수 있다. | <u>.</u> |
| 1. ~ 3. (생 략) | 1. ~ 3. (현행과 같음) |
| ② ~ ① (생 략) | ② ~ ① (현행과 같음) |